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2026. 9. 29.

교 육 부
국립국제교육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 1. 현황 1
- 2. 한계 및 개선 방향 3

II.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5

- 1. AI·디지털 기반 2029 TOPIK 체제 개편 6
- 2.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 대응 고도화 · 10
- 3. 응시수요 적극 대응 및 시험 정보 제공 확대 · 13

III. 주요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안] 15

- 참고 1. 현행 TOPIK 관련 법령 현황 16
- 참고 2. 현행 TOPIK 부정행위 조치 기준 17
- 참고 3. 국립국제교육원 TOPIK 신분증 지침 개정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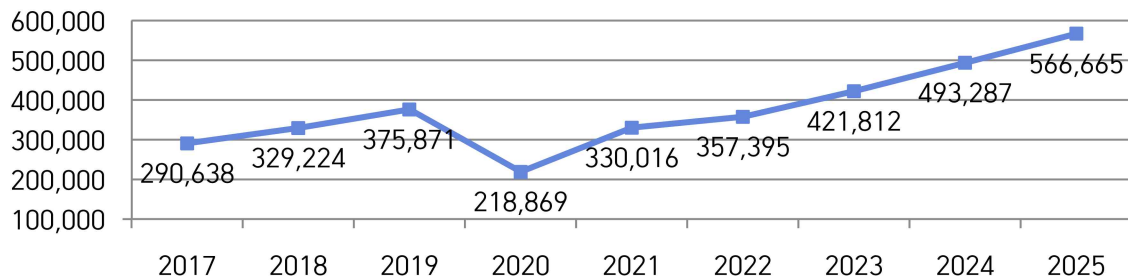
□ 외국인 대상 공신력 있는 한국어 시험으로 정착

- '97년 TOPIK 도입 이래 누적 128회 시행(~'26.7월), '25년 기준 국내·외 89개국 367개 지역 56.6만 명 지원

※ 지원자 수 : ('17년) 29.0만 명 → ('21년) 33.0만 명 → ('25년) 56.6만 명

※ 시행 국가 수 : ('17년) 70개국 → ('21년) 75개국 → ('25년) 89개국(PBT 89개국, IBT 12개국)

< TOPIK 지원자 수 증가 추이 >



※ '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자 수 감소

-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외교부·교육부 산하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이 국내·외 시험 시행을 총괄해 책임 있게 국가시험 관리
- 외국인의 한국 유학,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베트남과 홍콩에서는 현지 대입에도 활용

□ TOPIK 디지털 전환 방향 설정으로 기술 변화에 적시 대응 노력

- 컴퓨터로 응시하는 인터넷 기반 시험인 'TOPIK IBT' 도입('23년), 점진적으로 시행 규모 확대('23. 3개국 연 1회 → '25. 12개국 연 6회)
- '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시험의 공공성을 전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결정('25년)

※ 주요 내용 : 정부 주도로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 TOPIK PBT·IBT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IBT 확산

현행 TOPIK 시험 체제

□ TOPIK PBT

구분	TOPIK I (초급)	TOPIK II (중·고급)
시험 영역	듣기, 읽기	듣기, 읽기, 쓰기
점수 체제	총 200점 (영역별 100점)	총 300점 (영역별 100점)
문항 수	총 70문항 (듣기 30문항, 읽기 40문항)	총 104문항 (듣기·읽기 50문항, 쓰기 4문항)
등급 구분	• 1급: 80점 이상 • 2급: 140점 이상	• 3급: 120점 이상 • 4급: 150점 이상 • 5급: 190점 이상 • 6급: 230점 이상

□ TOPIK IBT

구분	TOPIK I (초급)	TOPIK II (중·고급)
시험 영역	듣기, 읽기	듣기, 읽기, 쓰기
점수 체제	총 400점 (영역별 200점)	총 600점 (영역별 200점)
문항 수	총 52문항 (듣기·읽기 26문항)	총 63문항 (듣기·읽기 30문항, 쓰기 3문항)
등급 구분	• 1급: 121점 이상 • 2급: 236점 이상	• 3급: 191점 이상 • 4급: 291점 이상 • 5급: 361점 이상 • 6급: 431점 이상

□ TOPIK 말하기 평가

구분	TOPIK 말하기 평가	비고
시험 영역	말하기	• TOPIK I·II와 분리 시행 및 별도 성적표 제공 • IBT 방식으로 실시
점수 체제	200점	
문항 수	6문항	
등급 구분	• 1급: 20점 이상 • 2급: 50점 이상 • 3급: 90점 이상 • 4급: 110점 이상 • 5급: 130점 이상 • 6급: 160점 이상	

2 한계 및 개선 방향

□ 변화된 한국어교육 환경과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틀 필요

- '14년 현재의 TOPIK 평가 틀로 개편된 이래 기출문제가 축적되면서 정형화된 유형에 맞춘 시험 전략 확산, 한국어 소통 능력 측정 제한적
- 해외 어학시험에는 이미 AI 기술이 실제 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나, TOPIK은 아직 시험 시행 각 단계에서 아날로그 비중 우세

※ 어학 시험 AI 활용 사례 : (TOEFL 홈에디션) 재택 시험 감독, 쓰기·말하기 채점, (듀오링고* 영어시험) 신분 확인, 시험감독, 단답형 쓰기·말하기 채점 등

* 외국어 학습 앱으로 40여 개 언어 학습 서비스와 온라인 실시간 영어시험(DET, Duolingo English Test) 시행(전 세계 6,500여 개 기관에서 인정)

- TOPIK 응시자 통계와 국제 언어교육 동향·기준* 등을 종합 분석해 시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 연구 기능 보강 필요성 절실

* 미국외국어교육협의회(ACTFL) 언어 숙달도 가이드라인,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등

- 청년 신진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TOPIK 출제·채점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저변 확대 필요

현장 의견

- (A 국제처장) 시험 테크닉을 연마해 TOPIK 등급을 취득하는 경향, TOPIK 성적과 실제 실력 간의 괴리 커 유학 생활에 요구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례 다수
- (B 한국교육원장) TOPIK은 말하기 영역이 없어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 공인 어학 성적 학점 인정 정책에 활용되는 데 한계

□ 시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공정성 강화 대책 요구

-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성적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유학·체류 요건 등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목적의 시험 부정행위 발생

※ 부정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비율) : ('21년) 331명(0.1%) → ('25년) 606명(0.1%)

- 부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시험 무효 처리 및 응시 자격 제한 (2~4년) 조치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하고 있으나, 경각심 부족

- 익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대리시험, 대륙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 공모 정황도 확인
- 실시간 통·번역이 제공되는 AI 안경*,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폰, 위장형 촬영기기 등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필요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손을 쓰지 않고도 실시간 통·번역, 사진·영상 촬영, 정보 검색 등 수행 가능

관련 언론보도

-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500건 돌파...한국어 열풍에 시험도 과열('26.4. 뉴스1)
- 800만원 내고 대리시험... '토픽' 부정취득 중국 일당 113명 검거('26.7. 세계일보)
- 높아지는 한국어 위상에 몸살 앓는 토픽...브로커에 대륙간 시차 악용까지('26.7. 중앙일보)
- AI글라스 부정행위,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서 외국인 3명 적발('26.7. 서울경제)

□ 급증하는 시험 수요에 비해 응시 기회 부족

- 외국인 대상 시험 관리의 난도가 높아 국내 교육기관의 시험장 참여 유인 부족, 국외는 관리 여력 포화로 시행 횟수·시험장 확대 곤란

관련 언론보도

- "한국 취업 목표였는데..." 문제보다 더 어려운 '한국어능력시험 접수'('24.6. JTBC)
- K팝 콘서트 예매보다 더 치열한 TOPIK 접수('25.10. 동아일보)

- 기본적인 정보 획득 창구인 TOPIK 홈페이지가 국내 시험 지원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국외 응시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부족

※ 국외 시험장은 지역 단위로만 정보 제공(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등), 응시료·접수처 등 상세 정보는 게시판 내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현장 의견

- (C 재외공관) 'K-이니셔티브 확산'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외 현지에 TOPIK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무적인 업무부담이 커 담당자 업무 기피 추세
- (D 한국교육원장) 지역 내 잔여석이 없어 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 지역이나 국가의 잔여석 정보는 전화 등 매우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AI·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와 국내·외 응시수요 대응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TOPIK의 미래 지향적 도약** 모색

Ⅱ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비전

AI·디지털 기반의 첨단 시험 체제 마련

목표

AI·디지털 기반의 평가 개편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30년 TOPIK 지원자 수 **100만 명** 달성

□ 추진방향

평가 체제 혁신	•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혁신적인 한국어 숙달도 평가 체제 마련
공정성 관리	• 입시·이민 등 높은 수준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 받는 시험으로 위상 강화
접근성 강화	• 시험에 관심 있는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정보 획득과 시험 응시가 편리한 환경 구축

□ 추진과제

①	AI·디지털 기반 2029 TOPIK 체제 개편	• 전문가 속의 기반으로 혁신적인 평가 틀 마련 •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출제·채점·시험 혁신 • 시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 기반 확대
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 대응 고도화	• 부정행위 조치 기준 정비 및 제재수준 상향 • 유형별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 부정행위 예방·관리 체계 구축
③	응시수요 적극 대응 및 시험 정보 제공 확대	• 수요 맞춤형 응시 기회 확대 • 시행기관 인력 확충 및 업무 부담 경감 • 온라인 시험 정보 접근성 강화

- ◆ TOPIK 전면 개편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 수요에 신속히 대응
- ◆ 자동 출제·채점, 자택 시험(홈테스트) 도입 등 AI 기반 평가 혁신
- ◆ 한국어교육 분야 학술 연구 진흥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

□ 전문가 숙의 기반으로 혁신적인 평가 틀 마련

- (시험 체제 개편) AI·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해외 주요 어학 시험 개편 흐름을 반영해 혁신적인 한국어능력 평가 틀 마련

※ 주요 일정(안) : TOPIK 개편위원회 구성('26.10월) → 체제 개편안 마련·발표('27.6월)
→ 시범 시행('28년) → 개편 체제 적용('29년)

- 다각화·다양화된 국내·외 한국어교육 환경을 반영해 응시수요 대응과 유학·이민정책의 발전을 동시 도모할 수 있는 시험 개선방안 도출
- 해외 한국어반 학생, 재외동포, 이주배경학생 등 국내·외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 평가·인증을 위한 청소년용 TOPIK 개발 검토

- (TOPIK 개편위원회) 한국어교육, 교육평가, AI·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TOPIK 개편위원회' 구성·운영('26.하반기)

※ 지역·성별·소속 등 안배, TOPIK 출제·채점 고경력자뿐만 아니라 신진 연구자도 포함

- 위원회 연구·논의를 거쳐 '2029 TOPIK 체제 개편안' 마련(~'27.6월)
- 현행 평가 틀('14년~)의 성과 및 한계, 국가별 한국어 학습 환경 및 학습자 특성, TOPIK 활용처(정부·대학·기업 등) 요구 등 종합 검토

< TOPIK 개편위원회 주요 검토과제(안) >

- | | |
|-----------------------|---------------------------|
| • 중·고급 단계 통합 또는 분리 방안 | • TOPIK PBT-IBT 평가 동등화 방안 |
| • 쓰기·말하기 평가 방안 | • 청소년용 TOPIK 개발 검토 등 |

- (TOPIK 30주년 포럼) TOPIK 시행 30주년('97~'27년)을 기념하며 포럼 개최, 2029 TOPIK 체제 개편안 발표·공개('27.6월)

- (시험 준비) 개편안 발표 이후 약 1년간('28년) 국내·외 시범 시행과 온라인 연습문항 제공을 통해 응시자 준비 지원 및 시행 안정성 확보

□ AI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출제 · 채점 · 시행 혁신

❖ **기본 원칙** : AI의 기술적 오류 방지와 시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개입 절차 필수화(Human-in-the-Loop)

※ AI 생성 → AI 검증 → 전문가 검증 → 전문가 검증 결과 환류(재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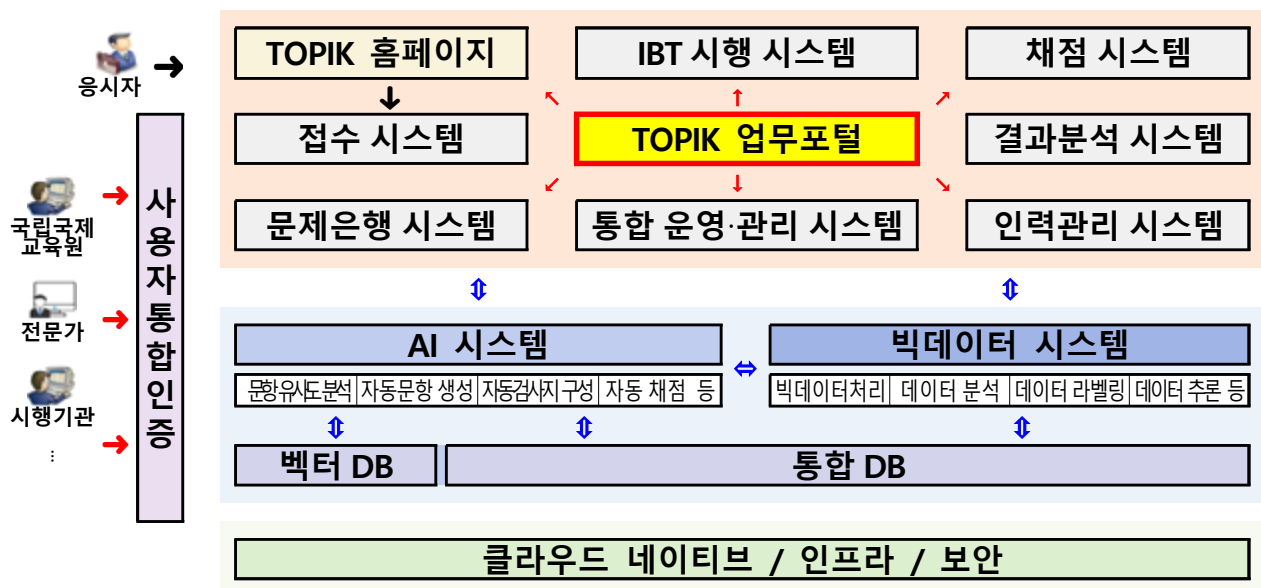
❖ **추진 로드맵(안)** : 2029 TOPIK 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준비(’26~’28년) → 구축(’27~’28년) → 전환(’29~’30년)”

2026.下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체제 개편안 마련, 시범 시행 준비		시범 시행	2029 개편 체제 적용	
ISP 수립 및 시스템 개발			AI 평가 기술 적용	
문제은행·데이터 확보, 전문가 협의				

- **(AI 자동 출제)** 문제은행 데이터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을 통해 등급별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자동 출제 시스템 구축
 - ※ TOPIK 등급별 어휘 및 문법, 문항 출제 지침, 문항 해설서 등 반영
 - 생성된 문항의 기출 유사도 분석, 난이도 예측, 회차별 문제지 배치 자동 구성, 동일 회차 문제지 간 난이도 균등화 기능 등 탑재
 - 전문가의 검수 의견, 시험 시행 결과(통계) 등을 AI가 재학습하도록 설계해 점진적으로 AI 자동 출제 품질 향상
- **(AI 자동 채점)** 외국인의 쓰기·말하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채점 과정을 알고리즘화한 AI 자동 채점 시스템 구축
 - 답안의 손글씨·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문법·어휘·논리 전개 등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자동 산출
 - AI의 1차 채점 결과를 전문 채점위원이 최종 검증해 공정성 확보
- **(TOPIK 홈테스트)**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TOPIK 홈테스트’를 시험 수준별로 단계적 도입

- AI 감독 시스템으로 안면 인식, 시선 추적 등 부정행위 방지 기술 탑재
- 유학·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낮은 등급부터 적용하면서 전면 시행 전까지 충분한 검증 과정 진행('29년~)
- (통합 플랫폼 구축) AI 평가 시스템 개발 시, 기존 TOPIK 운영 관련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 G-클라우드 기반 단일 플랫폼으로 구축('28년)
- 문제은행 구축, 채점, 결과분석, 인력풀 관리 등 제반 업무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TOPIK 통합형 디지털 평가플랫폼 구상도(안) >



- (전환기 준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AI·디지털 방식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문제은행 및 AI 학습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확보·정제
 - 문제은행에 다량의 문항을 확보(연 4,000문항)하고, 입고 문항에 대해 주제, 평가요소 등 세부정보 분류(labeling) 및 사전검증(pre-test)
 - 기출문항 포함 문제은행 중 타당도·변별도·난이도가 우수한 자료를 선별해 핵심 AI 학습 자료로 활용
 - 국립국제교육원이 보유한 TOPIK 쓰기·말하기 영역 답안 등 실제 외국인의 필기·음성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

□ 시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 기반 확대

-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대학 등 전문기관을 TOPIK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지정하고 TOPIK 시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업무 위탁
 - 회차별 시행 결과 분석 등 시험 개선을 위한 기본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수시 과제*로 데이터 기반의 한국어교육 학술 연구 지원
- * 예시 : TOPIK 성적 분포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한국어 숙달도 특성, TOPIK 말하기 평가 데이터로 분석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실태 등
-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TOPIK 데이터 활용 연구 관련 위탁 근거 마련 추진('26년)
- 종합적인 데이터 조사·분석과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외국어·평가 분야 학계에서 TOPIK의 국제적인 인지도·공신력 강화
- (전문가 인력풀 확대) 공모·연수 등을 통해 출제·채점 전문가 발굴('26년~)
 - 대학·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TOPIK 인력풀 등록을 홍보하고, 대학 소속 강사에 대한 기관장 추천서 폐지 등 지원서류 간소화
 -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고 이주배경 학생 지도 등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초·중등학교 교원도 출제 인력풀에 적극 포함
- ※ 학교 수업과 TOPIK 출제위원 활동 병행이 가능하도록 교사 전문가 대상으로는 방학 중 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 중심으로 운영
- 측정·평가 전공 전문가도 채점 관련 인력풀로 공개모집
- 신진 전문가의 출제 참여 기회를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집중 워크숍(출제캠프)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
- ※ 위원급-팀장급-위원장급 역할별 임기와 최대 참여 가능 횟수 등을 지침에 명시, 경력에 따라 팀장급-위원장급 순차 배치
- 회차별로 다양한 성별, 연령, 소속,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출제위원 비율 관리
- 출제 경험·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상호 교류 기회 확대

2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 대응 고도화

- ◆ 부정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게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
- ◆ 유형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관리 체계 개선

□ 부정행위 조치 기준 정비 및 제재수준 상향

- (법적 근거 강화) TOPIK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명확하게 규정
 -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 조치 근거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 입법
 -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TOPIK 성적을 활용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입학·졸업 취소, 장학금 환수 등 조치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개정안(안) >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무효가 된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한 입학 허가, 학위 수여, 장학금 지원 등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치 기준 정비 및 제재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TOPIK 부정행위 조치 기준 전면 개정 및 조치 수준 상향
 - ▲경미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로 부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지침에만 포함된 AI 안경 등 최신 부정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
 - 현재 대리시험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시험지·답안 유출, 신분증·서류 위조 행위에도 확대 적용하고, 중대한 업무 방해로 간주하여 5년간 응시자격 정지로 제재 수준 상향

< TOPIK 부정행위 조치 기준 개선안(안) >

구분	조치	부정행위 유형
경미한 부정행위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 작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 감독관의 시험 운영 관련 지시 불이행 등
중대한 부정행위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본인·타인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 커닝 또는 본인의 답안 공유 - 부정한 자료 소지 또는 이용 - 시험 중 AI 기술이 탑재된 기기 소지 또는 이용 - 감독관의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 등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경찰 수사 의뢰	• 본인·타인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 -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 시험 응시 - 시험지 무단 반출 또는 시험 내용 기록, 외부 공개 - 성적증명서, 신분증 등 시험 관련 각종 서류 위조 - 시험 중 통신기기, 무선 신호 등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

- (국내 유학 시 불이익 조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중대 부정행위자는 국내 유학 시 공인 언어능력 부문에 불이익 있도록 조치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 따른 대학별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지표 실적에서 TOPIK 중대 부정행위자 제외

※ 시험 접수 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화로 관계기관 협조 근거 마련

□ 유형별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 (대리시험) 유효 신분증을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제한해 지원자 편의를 위해 인정해 온 각종 공문서*, 모바일 신분증 등 불인정('27.1월~)
 - *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 (첨단 장비 활용)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의 무선 신호(블루투스·와이파이)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전체 시험장에 보급('26~'27년)
 - ※ '26.1월부터 국내시험장에 보급 완료, '27년 국외시험장으로 확대
 - 첨단 장비의 모양·기종 등 최근 적발 사례를 상시적으로 전 세계 시험 시행기관에 공유·교육하고 시험 감독 시 대응 철저 요청
 - ※ 국외 시행기관 감독관 교육용 영상자료 제작(개인 장비 검사 방법 등 포함)
- (문제지·답안 유출) 같은 회차의 시험이라도 국가별·지역별 시험일(토·일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게 출제('27년~)
 - AI·디지털 전환('29년) 이후 점차 국가 단위로 문제지 유형 세분화
 - ※ 권역 구분(한국과의 시차) : ① 한국·아시아·오세아니아(+1~3시간, -1~4시간) ②유럽·중동·아프리카(-5~9시간) ③미주(-12~16시간)

□ 부정행위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상시 인력 배치) 국립국제교육원 TOPIK 센터 내 부정행위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배치로 예방·교육-사후관리 등 대응체계 강화
 - 부정행위 알선 광고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시험장 부정행위 관리 교육 및 현장 지원, TOPIK 활용기관 협력 등 담당
- (성적증명서 기관 제출 시스템) TOPIK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등 TOPIK 활용기관에 시험 결과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기존) 응시자 개인별 성적증명서 출력 및 제출 → (개선)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 ※ 시스템 개요(안) : 활용기관별 기관코드를 부여하고, 지원자가 성적확인 화면에서 직접 기관코드를 입력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활용기관 담당자가 제출내역 조회
 - 성적증명서 위·변조 원천 방지, 부정행위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부정행위 처분 내역을 공유해 기관별 후속 조치 지원

- ◆ 맞춤형 응시 기회 확대와 시행기관 업무 경감으로 응시수요 대응
- ◆ 온라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잠재 응시수요 발굴

□ 수요 맞춤형 응시 기회 확대

- (국내 맞춤형 수요 대응) 수요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국내 시험장을 확대하고, 특별한 응시수요가 있는 기관의 단체응시 지원
 - 국내 시행기관 모집 규모 확대 및 시설 요건(최소 수용인원 등) 완화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시도교육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은 관련 요건·절차를 간소화해 소속 구성원만을 위한 시험 시행 허용*
 - * 내부 감독관에 의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관리 인력 파견
 - 대학의 자교 소속 유학생을 위한 단독 시험 시행은 일반인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불인정하되, 단체응시 비율 확대(40→70%)
- ※ 시험장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 응시수요가 높은 대학 중심으로 협약 체결
- (국외 시험장 기준 완화) 신규 시험장 발굴을 독려하고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험장 가이드라인 개선('27년)
 - 시험장 운영 초기에는 지원자가 소수이더라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 지원자 기준(TOPIK I·II 시험별 10명 이상) 적용 유예
 - 면적이 넓고 응시수요가 높은 도시는 2개 이상의 기관을 TOPIK 시행기관으로 지정해 서비스 범위 확대(現 도시별 1개 기관 지정)
- (말하기 평가 응시 지원)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교육·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TOPIK 말하기 평가 활성화
 - 국외 TOPIK 말하기 평가 시행 국가 발굴·확대('26. 5개국* 시범시행)
- ※ 현재 말하기 평가는 국내에서만 시행 중 / * 베트남·우즈베크·태국·일본·인도네시아
- 유학생 입학·졸업 시 말하기 평가 활용, 외국인 채용 시 말하기 평가 등급 제공 등 활용처 확대 관련 관계기관 협의('26년~)

□ 시행기관 인력 확충 및 업무 부담 경감

- (퇴직공직자 활용) 시험 관리·감독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경찰 등 퇴직 공직자를 시험 감독관·지원관으로 적극 활용('27년~)
- (국외 지원인력 확대) 국외 시행기관의 전담직원 및 단기 지원인력 고용 조건을 완화해 추가 인력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지원('27년~)
 - 지원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시행 국가에서 단기 지원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가능 기간도 대폭 연장(최대 20일→60일)

< 전담직원 및 단기 지원인력 채용 기준 개선안(안) >

구분	기존	개선
전담직원	• 연 3회 이상 시험 시행하고 지원자 수 4,000명 이상인 때 고용 가능	• 연 2회 이상 시험 시행하고 지원자 수 3,000명 이상인 때 고용 가능
단기 지원인력	• 지원자 수 300명 초과 시 10~20일 범위 내 고용 가능 - 300명 이하: 고용 불가 - 300명 초과: 10일 ~ 최대 20일	• 지원자 수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간 고용 가능 - 300명 이하: 10일 - 300명 초과 500명 이하: 15일 - 500명 초과 700명 이하: 20일 - 700명 초과 999명 이하: 30일 - 1,000명 이상: 60일

- (국외 정산 업무 간소화) 국외 시행기관 응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일괄 인정하는 방식*을 확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베트남·홍콩·중국 등 현지 전담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의 정산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교육원(재외공관), 해외 대학에도 적용

□ 온라인 시험 정보 접근성 강화

- (시험 정보 통합제공) TOPIK 공식 홈페이지 내에 국내·외 TOPIK 정보*를 일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연간 시험 일정, 시험장 위치, 응시 가능 인원, 시행기관 홈페이지·연락처, 응시료 등
- (온라인 학습 지원) TOPIK 기출문제 해설, 실전 모의고사 등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수험자료를 제공해 시험 준비 지원
-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TOPIK 공식 홈페이지에 탑재된 각종 정보를 한국어 수준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텍스트 중심으로 수정

Ⅲ 주요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안)

□ 주요 추진 일정

- 2026년 하반기
 - ‘TOPIK 개편위원회’ 구성·출범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문제은행 확충을 위한 문항 공모 및 전문가 인력풀 확대 추진
- 2027년
 - 2029 TOPIK 체제 개편안 마련 및 TOPIK 30주년 포럼 개최
 - AI 기반 TOPIK 디지털 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신분증 규정 개정 등 유형별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
- 2028년
 - AI 기반 TOPIK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2029 TOPIK 체제 개편 관련 시범 시행
- 2029년
 - 2029 TOPIK 체제 개편 적용
 - AI·디지털 시스템 활용 AI 자동 출제·채점 도입
 - TOPIK 홈테스트 시범 시행

□ 소요 예산

- AI 기반 TOPIK 디지털 전환 총 235억 원(국고)
 - ISP 수립 5억원('27년)
 - 구축비, 데이터/AI 모델 개발비 등 230억 원('28년~)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본조신설 2020. 12. 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1. 25.>

참고 2

현행 TOPIK 부정행위 조치 기준

조치	부정행위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8조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좌동) 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녹음·촬영·통신·결제·저장·충전·전자식 화면표시 기능 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전자기기 및 그 밖에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비전자기기 등 포함)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차.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필기구, 수정테이프 등 일체의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카.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좌동)

조치	부정행위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8조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좌동)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저장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성적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타.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기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IBT 시험에서 시험과 무관하게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AI 번역·작문·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행위 파.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좌동)

현행				개정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	고등학생만 해당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인자)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	고등학생만 해당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인자)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가.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에서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가. (삭제)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다. (삭제)			